

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·제한 가이드라인

1. 배경 및 목적

- 「청탁금지법」 및 「부패방지법」에 따른 외부강의등 제한규정이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 발생
 - 특히,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위원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과기정통부에서는 권익위에 관련규정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
 -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, 법령에 따라 위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
-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 및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제한에 관한 판단기준을 연구현장에 안내하여,
 - 연구자의 과제 평가위원 참여와 관련된 제약을 완화하고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해 겪는 혼선을 해소

2. 외부강의등 관련 제한

● (근거) 「청탁금지법」 제10조 /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(국민권익위원회 예규) 제17조 제5항

- (사례금한도) 연구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출연(연) 등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 시간당 40만원, 대학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금액 제한
- (신고의무)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
 - 다만,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인 경우 면제
- (횟수제한) 「부패방지법」 하위규정인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월 3회 이내로 외부강의등 횟수를 제한
 - 다만,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인 경우 면제

3. 외부강의등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

- ① ‘국가나 지자체 명의의 공문’에 의한 국가연구개발 활동 및 정책 자문 요청 ☞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횡수제한에서 제외
 ※ 「청탁금지법」 제10조 제2항 단서, 「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」 제17조 제5항 단서
- ②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‘공공기관 명의 공문’에 의한 요청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활동인 경우 ☞ 외부강의등에 미해당
 ※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
- ③ ‘서면’으로 하는 심사·자문 등 활동 ☞ 외부강의등에 미해당

4. 유형별 판단기준

< 유형별 구분 >

구분		① 요청 공문의 명의	
		국가나 지자체	공공기관
②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	○	유형1 (외부강의등 미해당)	유형3 (외부강의등 미해당)
	×	유형2 (신고의무 면제, 횡수제한 제외)	유형4 (외부강의등 해당)

- (유형1) ‘국가나 지자체 명의의 공문’ 요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(평가, 정책자문 등)을 하는 경우
 ☞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, 사례금제한, 신고의무, 횡수제한 등 규제에서 제외·면제됨

유형1의 예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자문회의 위원으로 참여 • 「지식재산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

- (유형2) ‘국가나 지자체 명의의 공문’ 요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(평가, 정책자문 등)을 하는 경우
 ☞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횡수제한에서 면제

유형2의 예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T/F 성격으로 출범한 ‘과학기술 현장 규제 점검단’, ‘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’ 등의 자문그룹 참여(국가나 지자체 공문) •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 등의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(국가나 지자체 공문)

- (유형3) '공공기관 명의의 공문' 요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(평가, 정책자문 등)을 하는 경우

☞ 유형1과 동일하게 적용

유형3의 예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위원으로 참여 •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위원으로 참여 • 「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」 제7조에 따른 상위평가 위원으로 참여

- (유형4) '공공기관 명의의 공문' 요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(평가, 정책자문 등)을 하는 경우

☞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사례금 상한액, 신고의무, 횡수제한 등 규제 적용

유형4의 예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기관이 개최한 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참여 •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별사업 등의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특정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전문가로 참여

5. 협조요청 사항

- (연구기관 인사·감사부서)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외부강의등 신고, 사례금 제한, 회수제한 여부를 안내
 - 다만, 연구자의 외부활동이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제한기준은 마련
- (전문기관 사업부서)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석 요청 공문 발송 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문에 명시하여 발송
 - 과도한 평가위원 출립·수당지급을 막기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·운영